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1. 창업자

-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 가. 제품의 설명서
- 나. 견본품
-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3.6>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6>

**제4조(선정 통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

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 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7.5.18>**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18>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등급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7.5.18>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5.18>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2009.9.10>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5.18>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8]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등급분류필증 등)**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분류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헛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못쓰게 된 등급분류필증을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악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공표 방법)**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07.5.18>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본조신설 2007.5.18]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개정 2007.5.18>)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07.5.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개정 2007.5.18>)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18조(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9.10>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2009.9.10>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5.18, 2009.9.10>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삭제<2009.12.4>

제22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제24조(사후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삭제<2009.9.10>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5.18>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31조 삭제<2009.9.10>

#### 부칙 <제151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



공급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63호, 2007.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②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40호,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50호, 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
- ❖ [별표 2] 모범영업소표지판[제6조제2항관련]
- ❖ [별표 3] 삭제 &lt;2007.5.18&gt;
- ❖ [별표 4] 시설기준(제20조 관련)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별표 6] 과징금의금액산정기준[제27조관련]
- ❖ [서식 1]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 ❖ [서식 2]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 ❖ [서식 3] 게임물등급분류필증
- ❖ [서식 4]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 [서식 5]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 [서식 5 의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 [서식 6]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 [서식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 ❖ [서식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 ❖ [서식 9] 게임제작업자등록증
- ❖ [서식 10] 게임배급업자등록증
- ❖ [서식 10 의2]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 ❖ [서식 1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 ❖ [서식 1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 ❖ [서식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신고증
- ❖ [서식 14]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서식 15] (□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허가·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
- ❖ [서식 16] 삭제 &lt;2007.5.18&gt;
- ❖ [서식 17]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서식 18] 폐업신고서

- ◆ [서식 19] 행정처분기록대장
- ◆ [서식 20] 관계공무원출입·조치사항기록부
- ◆ [서식 21] 불법게임몰수거증
- ◆ [서식 22] 게임몰단속반원증